##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12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정진욱·김동아·양부남

박지원 • 박홍배 • 오세희

이개호 · 조인철 · 허성무

이언주 · 안도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 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과 같이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10).

#### 법률 제 호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를 "제4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와 제6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운영재고 유지의무의"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 ⑤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적정한 운영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수 있다.
- ⑥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
	<u>한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
	<u>가스 저장시설의 적정한 운영</u>
	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저
	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⑥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u>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저장</u>
	시설의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	⑦ 제4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	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와 제6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한다.	의 저장시설 운영재고 유지의
	<u>무의</u>